2026. 10.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주상현 의원)

의 안 번 호	2026-108

발의연월일 : 2026. 10. .
발 의 자 : 주상현 의원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시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본 원칙과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공정무역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원 범위 및 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아.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판매처 표시 제정 및 사용,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여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붙임자료

가. 조례제정안

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련 법령 발췌서

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현황

마. 타 시·군 조례

바. 입법예고 결과보고

사.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한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정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 농업・교육・환경 등 김제시의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정책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무역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① 시장은 김제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정무역 업무를 전담 또는 겸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5.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판매처 표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정무역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촉진 및 홍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처 표시의 제정 및 사용)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자가 공정무역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김제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
- 관련 조문 :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공정무역 활성화 교육·홍보·캠페인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27	2028	2029	2030	2031
금 액	70,000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나.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3. 작성자 :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장 김은주

경제진흥과장 박 정 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
							-
세 출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공정무역 활성화 교육·홍보·캠페인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재원 조달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관련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28조」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조례명
	여	부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		「익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남원시		○	
완주군	○		「완주군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 타 시·군 조례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09.22 조례 제23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여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증진하고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동반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한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 공정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 교육, 환경,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정무역도시 조성)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마케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전시・캠페인

4. 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한 상품 개발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와 유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처 표시 제정)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의 제정·사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57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8.04.19 조례 제3476호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전주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지지, 달성하기 위한 관련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무역 시스템을 지칭한다. <개정 2019.12.20.>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고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

업·조합·단체가 생산·가공·유통하는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전시·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전주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

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③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 시 관계부서 국장 1명, 공정무역 관련 국제기구·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자문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

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주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9. 29.(6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라윤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형원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9. 30. 이영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213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부서의견 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서의견조회 결과보고

주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부서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6. 9. 23. – 2026. 9. 29.(6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5112(2026. 9. 23.) 로 공문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장라윤	행정복지 전 문위원	김형원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9. 30. 이영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214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075 팩스번호 063-540-2777 / nekimi321@korea.com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